

APYLD

GUIDE BOOK

다단계 판매원 수첩

2023.11

(주)에이필드

본 다단계판매원 수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에이필드가 회원에게 무료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04-11 회원등록 안내 및 청약철회

12-18 후원장려금의 산정 및 지급기준

19-23 (주)에이필드 방침 및 절차

24-26 다단계 판매 란 무엇인가?

27-41 (주)에이필드 회원 규정

42-45 기타 안내 및 다단계판매원등록증

회사명 : (주)에이필드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 (연남동 225-47) (03980)

연락처 : 1833-5002

팩스번호 : 0303-3446-5002

홈페이지 주소 : www.apyld.com

인허가증

다단계판매등록증 : 서울 제833호

사업자등록번호 : 535-86-00058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가족친화 우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판매상품 :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식품

에이필드 회원등록 안내

에이필드의 회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법에서 정한 성인 (만19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자.)이어야 합니다. 회원 자격은 개인에 한해서만 부여됩니다.

1. (주)에이필드의 사업전반에 관해 설명해 주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만일 후원자가 없을 경우 본사로 문의하십시오. (대표전화 1833-5002)

2. (주)에이필드에 대해 알아보시고, 판매 상품 및 사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3. 회원등록계약서를 빠짐없이 기재한 후, 회원등록 신청을 합니다.

4. 회원등록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사실인 경우에만 회원번호가 부여되며, 사업이 가능합니다.

- 기재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회사의 직권에 의해 회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의 자격 승인은 회사의 고유 권한)

5. (주)에이필드 사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_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되며,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후원 활동 및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절차

(1)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미성년자

③ 법인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에이필드와 소속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 기준의 조건으로 과도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3.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4.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

다단계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5.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6. 다단계판매원 등록 시 본인 등록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내역을 기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등록된 판매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7. 판매원과 소비자의 의미-청약철회

(1) 판매원(회원) : 판매원은 사업활동에 참여하고자 회사에 등록된 회원을 말하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이 가능합니다.

(2) 소비자 : 단순히 상품 사용만을 목적으로 회사에 등록된 자를 말하며, 구매계약을 받은 날부터 14일(단,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정보가 미 기재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청약철회의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합니다.

8. ㈜에이필드는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회사가 청약의 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불이행으로 대금 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 특수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 대금 환급 금액의 100% (소비자 1인에 대하여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판매원 : 대금 환급 금액의 90% (판매원 1인에 대하여 구매계약체결일로부터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에이필드 회원 모집과 탈퇴

[에이필드 회원 모집과 탈퇴 절차]

하위 회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1. (주)에이필드의 모든 회원들은 하위 회원을 모집 및 등록할 어떠한 의무나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2. (주)에이필드 회원은 (주)에이필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이때 등록하는 회원은 소개한 회원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3.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하위 회원이 정상적인 판매와 후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함)”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 다단계판매 회사나 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1. 다단계 판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2. 다단계 판매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직 내 단계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상품 대금 또는 용역 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 시기
7.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청약의 철회와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단계 판매 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에이필드 회원 탈퇴

(주)에이필드의 모든 회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탈퇴 서류 제출 및 홈페이지,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필수)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주)에이필드는 회원의 탈퇴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주)에이필드의 다단계판매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에이필드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본 수첩에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이해 하여야 합니다.

다단계판매원 활동 법규

1. 다단계판매원 기재사항 변경

(주)에이필드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등록신청서 상에 기재한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변경 신청서(당사 소정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계좌 변경 시에는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야 가능합니다. (신분증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 처리하여야 하며, 가급적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사항을 변경할 것을 권유합니다.) 단, 회원등록 신청 후 후원인 및 추천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 승급 및 보상

(주)에이필드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당사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 후원수당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상위 다단계판매원으로 승급 하고, 매출 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상품구매주문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에이필드의 모든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등에 의한 후원 수당의 회수

- (1)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 등의 이유로 해당 건에 대한 본인 다단계판매원이 기 지급 받은 후원 수당을 반납하는 채무를 진 경우 (주)에이필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될 후원 수당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계 처리합니다.
-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다단계판매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당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채권을 회수 합니다.

5. 영업방해

(주)에이필드의 다단계판매원은 동종 업종의 타회사에 가입하여 당사 소속의 다단계 판매원에게 타회사의 사업을 권유하거나 당사를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등으로 당사 조직의 와해를 기도 또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금지되며, 이 경우 당사는 진상 조사에 의해 사실이 판명될 경우 다단계 판매원의 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6. 판매 재고 보고(법 제17조 2항)등

다단계판매원은 회사에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방법으로 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청약철회(반품)를 할 수 없습니다.

7. 과대과장광고 금지안내

최근 일부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불법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식으로 배포한 자료 외에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료들 가운데 허위 광고나 과대광고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가 되면, 본인과 회사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수 차례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배포된 자료 외에 회사의 승인 없이 제작된 각종 홍보용 자료 사용을 금지할 것을 교육하고 공지를 해 왔습니다. 특히 웹사이트, 사업보조물품, 홍보용 전단지, 간행물, 명함, 대외 문서 등에 회사명과 에이필드 상표(로고)를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회사 차원의 제작물이나 홍보물로 오인케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사실 확인 후 회원자격정지 및 교육센터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된 회사의 금전적 손해 배상 뿐만 아니라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에이필드 사업을 위태롭게 하는 이러한 행위를 삼가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상기 사례 발견 시 본사에 제보 바랍니다.

에이필드는 사업환경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깨끗한 사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사업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주)에이필드의 다단계판매원은 소매 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에이필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판매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주)에이필드 업무절차

상품의 인도 시기

1. 직접 수령

본사나 전국 센터에 방문하시어 '상품구매계약서' 자필 작성 후 데스크에 접수하시면 영업일 에 상품을 직접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에는 구매 상품과 함께 공제 번호와 주문 번호가 기재된 상품구매계약서(뒷면 황색지)를 수령하시고 보관하셔야 합니다.

2. 택배수령 : 영업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주문 시 신청된 (수령자 기준) 주소로 배달됩니다.

주문 / 배송

1. 모든 회원은 (주)에이필드 상품을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새로운 구매를 할 경우에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가소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상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들의 구매 청약철회(반품)가 제한됩니다.

3. (주)에이필드의 회원들은 자신의 판매 능력이나 소비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에 따라 상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

구입한 제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약철회 할 제품과 그 제품의 청약철회통보서(다단계판매원 용)를 첨부하여 (주)에이필드 상품 철회(반품)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용한 제품 또는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에 의해 변형 손상된 제품은 청약철회가 불가 하오며, 제품의 청약철회는 구입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기 지급한 후원 수당 등을 당사에 환급해야 하며, 판매원이 후원 수당 등을 미 환급할 경우 당사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철회 시 배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회사가 부담합니다.

2) 상품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 또는 섭취 상의 문제에 따른 상품 반품일 경우 회원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7조(청약철회 등)

①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방문판매자 등”은 “다단계판매자”로 본다. 다만,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만 그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3. 29>

1. 재고 보유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재화 등의 재고를 보유한 경우
2.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용공제(시행령 제26조)

법 제18조 제2항 단서 및 제29조 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한 경우로 한정되며,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 (1)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대금에 5%를 공제합니다.
 - (2)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대금에 7%를 공제합니다.
4. 현금으로 구매한 제품을 청약철회 등을 할 경우 반품이 접수된 날로부터 3영업일에 입금처리가 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에서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품의 교환

1. 상품 교환

- (1) 상품교환이라 함은 회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제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제품으로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2)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내용물이나 용기의 결함을 지적하고 교환을 요구했을 경우 상품의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2. 상품 불만족

소비자 또는 회원이 구입한 상품의 반품 의사를 표시하고 환불을 요구한 경우 상품 보증 조건과 관련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나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 및 온라인 상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 지급한 후원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상품대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3. 반품의 절차

소비자가 아닌 회원은 회사에 보유 재고를 허위로 알리거나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반품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매 주문서 또는 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주)에이필드에 제출하고 반품 승인 후 본사로 제품을 반송해 주십시오.

※반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택배비는 접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제품불량으로 인한 택배비는 본사가 부담합니다.

4. 과다 재고

재판매 가능한 미사용 상품의 반품 요구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되, 회사는 회원의 과다 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 및 향후 상품 구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원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로부터 정당한 반품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반품해 주지 않을 경우, 구매자는 (주)에이필드에 직접 반품 의뢰를 하게 되고 (주)에이필드는 구매자에게 반품 금액을 환불합니다. (주)에이필드는 소비자(구매자)에게 환불 후 상품을 판매한 회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합니다.

(주)에이필드 마케팅 플랜

(주)에이필드 마케팅 플랜

마케팅 플랜 개요

본 마케팅 플랜은 (주)에이필드에서 상품 소비 또는 상품 판매에 대한 독립된 자격을 부여 받은 회원 (이하“회원”)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주)에이필드의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회원 본인과 하위 회원이 소비하거나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다양한 보상을 해주며, 개인 각자의 상품 소비, 상품판매 및 다른 회원들의 상품 판매에 관하여 교육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보상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직급명칭

| | |
|-----|--|
| 회원 | 에이필드 회원 |
| AP | 에이필드 파트너 / Apyld Partner |
| RD | 루비 디렉터 / Ruby Director |
| ED | 에메랄드 디렉터 / Emerald Director |
| DD | 다이아몬드 디렉터 / Diamond Director |
| CDD | 크라운 다이아몬드 디렉터 / Crown Diamond Director |

[직급 및 승급기준]

| 직급 | 승급기준 |
|---|--|
| 회원 | 본인 누적 매출 150만PV 미만 |
| AP / 에이필드 파트너 Apyld Partner | 본인 누적 매출 150만PV 이상 발생 한 회원 |
| RD / 루비 디렉터 Ruby Director | - 1,500만PV : 1,500만PV - 본인 하위 A, B라인 각 AP1명 이상 직접 추천한 회원 |
| ED / 에메랄드 디렉터 Emerald Director | - 5,000만PV : 5,000만PV - 본인 하위 A, B라인 각 AP1명 이상 직접 추천한 회원 |
| DD / 다이아몬드 디렉터 Diamond Director | - 1억 5,000만PV : 1억5,000만PV - 본인 하위 A, B라인 각 AP2명 이상 직접 추천한 회원 |
| CDD / 크라운 다이아몬드 디렉터 Crown Diamond Director | - 5억PV : 5억PV - 본인 하위 A, B라인 각 AP2명 이상 직접 추천한 회원 |

※ 본인 누적 매출이란 본인이 직접 구매한 매출PV 또는 추천URL 전송으로 인해 발생한 본인 매출PV

[직급 및 승급 및 유지 기준_매출 PV조건]

1. 직급 마감 시 하위 라인의 PV 합을 적용하여 직급 승급 및 유지

2.

PV합 기준은 월 누적 (1일~말일)

[지원금 지급 기준]

1. 팀 커미션(후원수당)

● **지급기준**

- 소실적 기준이며, 대실적은 무한 누적(본인 마감매출 미 달성 시 소멸)
- 전월 본인 최고직급에 해당하는 마감 매출 충족 시 보너스 발생
(신규 승급 시 신규 승급에 해당하는 마감매출 필요)
- 전월 마감 매출 PV 미 충족 시 당월 신규 가입한 본인 직추천 회원이 150만PV 이상일 경우 해당 마감 차수부터 보너스 발생
- 최고직급 RD이상 마감 차수 별 회사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구간별 주극점 변동
- 소비자 및 추천URL로 주문한 매출 AV는 본인 소실적 라인에 인정

※ 추천인 마감 차 AV, 기준 적은 라인에 적용.

● **지급내용:** 주급(월 4회 지급)

● **마감매출 기준 및 수당지급:** 마감(매월 8일, 15일, 23일, 말일)후, 2주 후 수당지급

| 직급 | 소실적 | 주극점 |
|--------------------------------|-----|---------|
| AP / 에이필드 파트너 Apyld Partner | 15% | 1,000만원 |

| 직급 | 소실적 | 마감 차수별 회사 전체 매출액 구간 | 주극점 |
|---------------------------------|-----|---------------------|---------|
| RD / 루비 디렉터 Ruby Director 이상 | 20% | 6억원 미만 | 1,000만원 |
| | | 6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 1,200만원 |
| | | 7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 1,400만원 |
| | | 8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600만원 |
| | | 9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1,800만원 |
| | | 10억원 이상 | 2,000만원 |

2. 추천3대보너스

● 지급기준

- SM패키지를 구매한 SM 달성자에게 발생하는 보너스이며 본인이 추천한 1대, 2대, 3대 회원의 월 상품 구매 합계액 총합을 일정비율로 지급한다.
- 최고직급 AP ~ CDD 대상
- 일반상품 : 추천1대(10%) / 추천2대 (3%) / 추천3대 (2%)
- SM패키지 : 추천1대(5%) / 추천2대 (3%) / 추천3대 (2%)
- SM자격을 달성한 AP 이상 직급 대상이며 추천계보압축(탈퇴회원 압축)적용
- 전월 마감 매출 충족 시 보너스 발생
- 미충족 시 당월 신규 가입한 본인 직추천 회원 150만PV 이상일 시 발생

● 지급내용 : 월급(월1회 지급) / 매월 말일 마감 / 익월 15일 수당 지급

3. 추천 보너스

● 지급기준

- 직접 추천(소비자 또는 회원)한 회원의 월 상품 구매 합계액 총합의 4%를 지급한다.
- 최고직급 회원 ~ CDD 대상
- 전회원 대상이며 추천계보압축(탈퇴회원 압축)적용
- 전월 마감 매출 충족 시 보너스가 발생 되며 SM 자격 회원은 발생 되지 않음
- 미충족 시 당월 신규 가입한 본인 직추천 회원 150만PV 이상일 시 발생

● 지급내용 : 월급(월1회 지급) / 매월 말일 마감 / 익월 15일 수당 지급

4. 승급보너스

● 지급기준 : 해당 직급의 달성 시 최초1회만 지급한다.

● 지급내용 : DD 직급 이상의 해당보너스에 대하여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 직급 | 보너스 |
|---|--------------------------|
| RD / 루비 디렉터 Ruby Director | 동남아 여행권(1매) |
| ED / 에메랄드 디렉터 Emerald Director | 현금 300만원, 동남아 여행권(2매) |
| DD / 다이아몬드 디렉터 Diamond Director | 현금 1,000만원, 동남아 여행권 (4매) |
| CDD / 크라운 다이아몬드 디렉터 Crown Diamond Director | 현금 5,000만원, 동남아 여행권(6매) |

※ 기타사항

- 1) 승급보너스의 여행권은 해당 회원이 해외여행 시행 시점에 회원 자격이 유지(활동회원)되어야 하며 회원자격이 유지되지 않을 시 참여 할 수 없으며 대체 상품, 현금 등의 대체 보상이 불가합니다.
- 2) 해외여행 시행 시점에 지정된 여행지로의 여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직급에 지정된 국가에 준하는 곳으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3) 동남아 여행권의 경우 당월에 2단계 이상 승급 시 최종 승급 직급에 해당하는 여행권만 발생합니다.

5. 직급 유지 보너스

| 대상 | 보너스 |
|-------------|-------------------------------|
| ED, DD, CDD | 연 2회 이상 최고직급 유지 시 동남아 여행권(1매) |

* 연내 상위직급 승급 시 중복 적용 불가

6. 센터 지원금

● 지급기준

- 소속센터 회원의 상품구매 매출 매출 합산 금액의 2%를 지급한다.
- 소속센터 회원이란, 회원가입 시 본인이 지정한 센터
- 소속센터 매출 인정 : Web, Mobile 구매 회원은 가입 시 등록된 센터로 매출 인정 단 센터를 방문하여 상품구매 계약서 제출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접수한 센터로 인정

● 지급내용 : 매월 말일 마감 / 익월 15일 수당 지급

[마감 매출 정책]

- 정의 : 대실적AV 유지 및 보너스(프로모션)를 수령하기 위한 매출 PV로 본인 최고 직급별로 상이하 다.(월누적PV)
- 적용 : 직급별 마감 매출PV를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실적AV는 전체 소멸되며 익월에 보너스 및 프로모션 달성액이 발생되지 않는다.
- 예외 (1) 회원(전월 최고직급) 및 당월 신규가입 회원은 보너스 발생 지급 조건 자동 인정 .
 (2) 전월 마감매출PV 미충족 시 당월 신규 가입한 본인 직추천 회원이 150만PV 이상일 경우 해당 마감 차수부터 지급 조건 인정 (대실적 소멸은 미인정)
 (3) 신규 승급 시에도 신규 직급에 해당하는 마감 매출 필요
 (4) 소비매출 및 추천매출은 본인 매출로 인정

- 소비매출 : 내가 직접 추천한 소비자가 구매한 매출
- 추천매출 : 추천URL 전송 후 소비자가 구매한 매출

● 마감매출적용 보너스 : 팀커미션, 추천3대보너스, 추천보너스 기타 프로모션 발생액

- 직급별 마감 매출-※ **대실적 AV누적은 AP 이상 직급 달성 차수부터 가능.**

| 직급 | 마감매출 |
|-----|----------------|
| AP | 본인 직접 매출 5만PV |
| RD | 본인 직접 매출 10만PV |
| ED | 본인 직접 매출 15만PV |
| DD | 본인 직접 매출 20만PV |
| CDD | 본인 직접 매출 30만PV |

[정산 기간 및 수당 지급일]

1. 팀 커미션 (후원수당)

| 마감차수 | 정산기간 | 마감일 | 지급일 |
|------|-----------|-----|--------|
| 1 | 1일 ~ 8일 | 8일 | 당월 23일 |
| 2 | 9일 ~ 15일 | 15일 | 당월 말일 |
| 3 | 16일 ~ 23일 | 23일 | 익월 8일 |
| 4 | 24일 ~ 말일 | 말일 | 익월 15일 |

2. 추천3대보너스, 추천보너스 및 센터지원금

| 정산기간 | 마감일 | 지급일 |
|------------|-------|--------|
| 매월 1일 ~ 말일 | 매월 말일 | 익월 15일 |

※ 마감일 및 수당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 휴무일일 경우 전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관계기관 및 당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수령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누적 이월 지급 됨.

[직급유지]

| 직급 | 내용 |
|----------|------------------------------|
| AP ~ CDD | 승급 기준과 동일하게 PV 합 충족(월 누적 기준) |

[지원금 지급 기준]

- 1) 당사가 지급하는 회원 지원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여 매출액 대비 35%를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 2) 회원의 후원 수당은 총 매출액의 35%를 초과 할 경우 전산에서 포인트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팀커미션 보너스에 적용)

[용어설명]

| | |
|---------------------|--|
| 회원 | 에이필드 제품을 구매하고, 후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후원 수당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회원 |
| 소비자 | 에이필드 제품을 단순 소비의 목적으로 구매 가능하며, 후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소비자 |
| 회원가 | 에이필드 회원이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 |
| PV (Position Value) | 직급 승급(유지) 및 마감 매출 기준금액 |
| AV (APYLD Value) | 후원 수당 계산 기준 금액 |
| 직급 | 에이필드가 정한 승급 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회원에게 부여되는 자격 |
| 최고직급 | 본인이 승급 한 직급 중 가장 높은 직급 |
| 유지직급 | 해당 차수 마감 시 유지한 직급 |
| 차수마감 | 월4회(8일, 15일, 23일, 말일) 마감 _ 팀커미션 |
| 월 마감 | 월1회 매월 말일 마감 _ 추천보너스, 센터지원금 |
| 대실적 | 바이너리 후원계보(2라인)에서 AV합이 더 큰 라인의 실적 |
| 소실적 | 바이너리 후원계보(2라인)에서 AV합이 더 작은 라인의 실적 |
| 대실적 AV누적 | 매주 마감 차 정산 후 남은 AV누적이며, 마감 매출 인정 시 유지 |

(주)에이필드 회원 금지행위

※ (주)에이필드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 부풀리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주)에이필드의 회원에게 하위라인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 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8.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회원이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회원으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회원이 그 하위라인 회원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하는 행위
11. 회원을 (주)에이필드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회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3.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14. 회원 조직 및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 회원의 지위를 상속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16.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 회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
17. 회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18. 상품,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금전거래만 하는 행위
19. 회원수첩에 기재된 사항을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0. 전술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에이필드 방침 및 절차]

에이필드는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전력을 다하는 유통 기업이며, 건전한 상업적 관습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각 회원의 선의적 사업운영 약속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회원은 반드시 방편법 및 회사의 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등록계약서 또는 회사의 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 시킬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정지된 동안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본인은 에이필드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 회원 수칙을 반드시 준수한다.
2. 당사자의 동의 없는 회원 등록 및 회사의 각종 서비스 등록·변경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원가입 정보를 허위 등록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임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추천인·후원인의 임의 지정, 홈페이지ID 및 비밀번호의 임의 등록·변경, 연락처, 주소지에 부정확한 정보 등록 등)
4.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허락 받은 범위를 넘어 회원 또는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타 사업, 타 기업, 선거, 정치, TM자료 제공 등)
5.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정보주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각종 등록서류를 허위작성 하거나 첨부서류를 위·변조하는 행위 또는 이를 방조, 묵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회원의 회사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타 회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글 등록, 비방, 특정 목적을 위한 선동, 개인정보 유출, 타 사업 홍보 등)
8. 회원 유치 대상자 및 타 회원에게 회사 사업의 성공을 빙자하거나 기대토록 하여 비정상적인 행동(합숙, 감금, 고금리 대출, 무리한 재화 구매, 타 회원 과의 교류 차단 등)을 요구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회사 사업과(상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 관련되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취직, 재택아르바이트, 부업알선 등의 명목)을 사용하여 소비자(회원 포함)를 유인하거나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파렴치한(폭언, 폭행, 인신모독, 성희롱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11. 본인의 사회적 신분, 친분, 직업 또는 회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 활동 강요 및 타 회원의 사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강요 행위 (회원탈퇴, 행사참여, 추천인 변경 등)를 하지 않는다.
12. 회사의 회원은 상품 판매와 구매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회사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상품의 강매 또는 강매 유도 행위
 - ② 판매 또는 구매 할당량을 정하여 하위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③ 소비자의 상품구매계약 없이 일방적인 상품 공급 및 대금 청구 행위
 - ④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3. 회원 조직을 이용 또는 회사의 회원(사업)활동을 명목으로 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및 회원을 이용한 차용, 투자유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4. 타 회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을 유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파트너의 현금 매출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체하고 해당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회원 및 소비자의 상품 반품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회원 또는 소비자에게 위압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6. 타 업체에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가명·차명 등을 이용한 회사 및 타사 회원등록 또는 회원 활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
18. 부부 또는 직계가족을 각각 타 라인에 회원등록 시키거나 서로 다른 라인에서 회원 활동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9.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라인 변경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회사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라인 변경 유도.
 - ② 라인 변경을 목적으로 한 회원탈퇴(집단탈퇴) 유도 및 탈퇴.
 - ③ 이미 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 중인 회원이 라인 변경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타 라인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차명계좌 형성 행위.
20. 회사의 회원이 타사(동종업체 등)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2중 또는 다중 등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1.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모임과 장소에서 타사의 사업설명 또는 홍보를 하며, 타 사업으로의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2. 타 사업과 관련되어 공정한 사업 진행 및 타 회원의 사업진행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자격정지, 수당 정지(수당 발생 없음)의 제재를 이행 할 수 있다.
23.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회원에게 타사(동종업체 포함) 및 타사 상품을 홍보, 권유, 판매, 또는 타사 판매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회원의 사업진행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4. 회사와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장소에서 소란, 난동, 비방, 선동, 도발 등을 포함하는 불건전한 행위를 일으켜 타 회원의 사업활동 및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5. 회사(임직원 포함)와 회원 및 회사 정책을 비방하는 유언비어 또는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특정 목적을 위해서 선동 또는 도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6. 회사의 임직원 및 회원에게 폭언, 폭행, 욕설 등의 과격 행위를 하지 않는다.
27. 회사의 회원으로서 회원 모집(회원 가입)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지 않는다.
28. 회원의 자격(지위와 권리)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9. 회원이 별도의 명칭(‘이사, 부장, 과장, 팀장’, ‘컨설턴트, 매니저’ 등)을 사용하여 회사로부터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0. 회사 명의를 서류를 허위 또는 임의 발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1. 회원이 회사의 사업과 관련 되거나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계약 (건물임차, 대출 등)에 회사 상호 및 대표자 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를 사칭하지 않는다.
32. 회원 간 금전 거래, 매출(직급) 달성을 위한 대출 유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33. 기타 회사의 방침 및 관련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34. 회사의 회원은 그룹, 라인의 형성과 무관한 각각의 독립된 경영 개체이며, 회원간 지위는 수평적 관계이므로, 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활동 (후원활동, 교육행사 참여 활동 등)에 회원 및 그룹 상호간 명령, 통제 등의 강제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단계 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1. 다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2. 다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 판매/연고 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 구매나 하위 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토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4. 정부는 다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회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다단계판매원이 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해당과)·사업자 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 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수당의 지급 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 되는 후원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 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을 구매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 “청약 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다. 계약서에 청약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 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 한다.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을 강요한다.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알선, 설명회, 교육 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에이필드 회원 관리규정

1. 본 관리규정은 (주)에이필드(이하“회사”라 한다)가 승인한 회원들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기한 것입니다.
2. 본 관리규정은 타 규정과 함께 회원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3. 당사의 회원들이 본 관리규정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회사는 규정을 위반 한 회원에게 경고, 자격의 정지 및 해지 등 회원에게 부여한 일체의 권리를 제한 또는 상실케 하는 권한을 보유합니다.
4. 회원은 본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들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영업 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시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 공식 출판물, 회사 공식 홈페이지, 공문서 등을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원은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에이필드(이하“회사”라 한다)와 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간에 (주)에이필드가 판매하는 상품(이하“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함에 있어서 상호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회원 간의 공동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주)에이필드 회원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률적용

본 규정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한다.

제4조 적용대상

본 규정의 적용대상은 회사에 등록된 전 회원들로 한다.

제2장 회원의 등록

제5조 회원의 자격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된다.

제6조 등록의 제한

회원 등록은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하며,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1. 미성년자
2. 학생,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3.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법인 또는 단체
5.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6. 파산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 절차에 있거나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의 일부가 정리, 파산 또는 법정 관리하에 있는 자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2회 이상을 받은 자, 다만, 마지막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는 제외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자로서 방문 취업자(H-2)소지자 및 합법적인 국내 체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외국인
11. 신원 및 거주지 등과 관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1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 1 신규 회원의 등록

1. 모든 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회원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한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신규 회원이란 기 등록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며 회원 등록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회원 등록의 경우 제6조 10호에 의거 외국인국내거소증, 외국인 등록증 등(관련 법령에 의해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자에 한함)과 여권 중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본 인명의 국내은행 통장사본, 회원등록 계약서, 외국인등록동의서 첨부)
3. 회원등록계약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대리인에게 있다.
4. 회원등록 시 생년월일만 수집을 하며 단 회원등록 후 수당 발생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2 부부회원의 등록

1. 회원은 법률적으로 혼인한 부부에 한하여 기 등록된 회원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부부 회원의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는 원칙적으로 단일 회원번호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원 활동상 필요에 의해 별도의 회원번호(ID)를 가질 수도 있다. 단, 이런 경우 배우자는 본인의 회원활동과는 무관한 별개의 라인으로 회원등록을 할 수 없다.
2. 부부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부 회원 신청서(회사서식)와 함께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3. 부부 회원은 회사 또는 회원 간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동등한 직급에 대한 예우 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과 동시에 회원으로 지켜야 할 본 규정 및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회원의 자격제한 및 제재는 부부 회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 국내 및 해외 투어 등 승급보너스와 프로모션은 1명에게만 적용됨)
4. 부부 회원의 권리 및 의무는 본 조항에 국한되며, 주 회원의 고유권한인 각종 보너스(수당) 수령 및 세법 관련 사항 등에 관해서는 주 회원 자체의 자격을 부부 회원 중 부 회원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5. 부부 회원이 이혼 시에는 회원자격을 주회원에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등록된 부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자격의 승인

회원자격은 등록 신청자가 회사로부터 고유한 회원번호(ID)를 부여 받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회원 자격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다.

제9조 회원자격의 의미

회사에 등록된 회원은 회사가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영업 방침과 마케팅 플랜 및 상품구매 등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활동을 행하는 일종의 독립회원으로서 회원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진다

제10조 회원의 정보관리

회원은 등록 시 회사에서 정한 문서 절차에 따라 개별 신상 및 추천과 후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상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제출당사자에게 있다. 또한,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회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에 따른 모든 책임(우편물의 반송 등)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11조 정확한 정보 숙지 및 전달의 의무

회사는 회원 등록 시 회사의 제반 규정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모든 규정과 정보를 숙지해야 하며 반드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정보만을 전달하되 내용을 왜곡 또는 과장되게 전달하지 않는다.

제12조 성실한 판매활동의 의무

모든 회원은 본인이 직접 상품을 사용한 후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확신이 있을 때 성실하게 판매활동에 임하며 하위 회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 활동의 책임을 진다. 또한 모든 회원은 자신이 추천·후원한 하위 회원 또는 상품을 판매한 소비자(회원)에게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야 한다.

제13조 교육후원 및 이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하위 회원에 대한 성실한 교육 후원을 통하여 수당을 지급 받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급 상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자는 교육을 이수하여 올바른 정책과 플랜을 이해하고 교육해야 한다.

제14조 납세의 의무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15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회사의 제반 규정에 동의 함은 물론 특히‘회원관리규정’에 동의하고 서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원은 판매 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정과 교육 및 관리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회원의 자격 및 활동

제16조 회원의 유효기간

1. 회원등록 후 3개월 이내 구매실적이 존재하는 회원
2. 상품최종구매일 기준 3개월 이내 구매실적이 존재하는 회원
3. 1,2항에 포함되지 않는 회원은 무실적 탈퇴가 가능한 회원이다.

제17조 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청약 철회자 본인 및 피추천계열의 상품구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 철회(이하“반품” 이라 한다)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 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한다.

(반품으로 인한 본인 및 상위 회원 직급 하락 시 승급으로 인해 발생한 수당(승급보너스 포함)은 환수 및 공제한다.

제18조 교환

“교환”이라 함은 회사에서 회원이 구입한 상품을 구입 후 3개월 동안 상품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어 동일 상품으로 교환 요청 시 3개월 품질보증제도에 의거 동일 상품으로 교환 가능한 제도를 의미한다.

제19조 회원정보 변경

1. 일반변경

회원이 기 등록된 일반 개인정보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청원 정보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2) 신청원의 주소, 자택전화, 휴대폰 번호 등은 홈페이지 마이오피스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 3) 개명 등으로 인한 성명 정정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개명된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를 구비해서 원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4) 후원수당 수령 계좌 변경 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변경할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온라인 본인 인증 서비스가 제공될 시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2. 상속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원은 각 호와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할 수 있다.

- 1) 회원이 사망 하였을 경우 그 법정 승계인이 회원의 자격을 상속받을 수 있다.
- 2) 유언장에 상속인을 지정하였을 시 지정한 상속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공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5장 회원의 금지사항 및 회원직의 직권해지

◎차명등록이란?

차명등록 및 활동이라 함은 실제 활동하는 회원과 가입된 회원이 다를 경우를 말한다.

제20조 동의 없는 회원 등록

회원은 특정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추천/후원)하는 행위 또는 보험 가입 등 타 목적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받아 회원으로 등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0조 1 차명 등록 및 유인 행위 금지

1. 회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타 회원에게 라인을 변경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제안, 유도,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3. 차명 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경과 시 3개월 이상~1년 이하의 수당발생정지 (수당소멸)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4. 탈퇴 후 차명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시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5. 회사는 고의적인 차명등록 및 이중등록으로 회원 활동 적발 시 즉시 본인 및 등록명의자의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제21조 등록제한자의 등록

회원은 교사(교원 포함)·공무원·미성년자·학생 등 회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등록시켜서는 아니되며, 스스로 본 규정 제6조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또는 지체 없이 회원계약해지를 한다. 만약 등록제한자가 탈퇴를 하지 않을 시 회사가 직접 탈퇴 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5조 (다단계 판매원) 참고

제22조 회원 등록 또는 판매 계약의 강요

회원은 상품판매에 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 유포

회원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 거래를 유도하거나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 현저히 부풀리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더불어 회사의 공식적 표명 이외에 본인의 임의적 해석이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다.

제24조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 부과 행위

회원은 등록된 회원과 회원 등록을 원하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교육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 및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청약철회 관련 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상품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연락 두절)하는 행위 또는 반품을 억제할 목적으로 상품 사용의 지연을 유도하는 행위
2. 본인의 동의 없이 상품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3. 고의로 상품을 반품 또는 반품과 탈퇴를 동시에 하여 본인명의/차명으로 타 라인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이 가입 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
4. 타 회사 이동 등 기타 목적으로 타 회원의 반품을 의도적으로 유도하여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하는 행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을 시행령 제25조]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화 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 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4.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 철회 등을 인정하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은 경우
5. 단, 회사는 방문판매법에 정한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 할 수 있다.

제26조 무리한 구매 또는 강매

1. 회원은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상품을 강매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하위 회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된다.
2. 회원은 본인 또는 상위직급자의 승급 및 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거나 하위 회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유도 또는 부담을 주거나 강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3. 회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사회적인 신분을 이용한 판매 행위

회원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자신의 하위 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유명인, 연예인 등 등록 하지도 않은 자를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을 등록시키거나 상품 판매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합숙·가출 등 기타 비정상적인 사업행위

회원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업 목적으로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단으로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방관·방조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회사 임직원 및 독점권 등의 사칭 행위

1. 모든 회원은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임직원으로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을 타사 상품이라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 및 지역 독점권을 사칭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과대 광고 및 정보전달의무 태만

회원은 회사의 상품 및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아니되며, 상품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상품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방치하여서도 아니된다.

제31조 사행심 조장 및 매출 유도

회원은 회사 수당 지급기준을 홍보하면서 사람만 가입시키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고객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 (학생, 미성년자, 노약자, 의사·행위 무능력자 등)에게 매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32조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회원은 소비자 및 관련 회원에 관한 정보를 재화 등의 배송, 대금 정산 등 회사의 회원 활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33조 대중매체 광고 및 이를 통한 판매 행위

1. 대중매체를 통한 회사 광고 또는 인쇄물 제작 행위 금지
 - 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중매체 등에 회사 관련 사항이나 제품을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 ②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상호·로고) 인쇄물을 제작·배포·판매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원은 (주)에이필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자신의 사업체 건물 또는 차량 외부에 에이필드 명칭이

나 로고 등을 부착 할 수 없으며(플랜카드, 포스터 포함), 에이필드 제품명 및 로고를 이용하여 전화번호 등에 등록할 수 없다

2. 제품 진열 판매 및 전시 금지

- 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차량 및 기타 영업시설 등에서 (주)에이필드 제품을 전시,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거나 시설설치 권유 및 제안 등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주)에이필드의 모든 회원은 제품을 회사로부터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된다.

3. 제품 변경 및 재포장 금지

- ①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의 내용물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 ② 제품 및 그 포장에 명시된 사항이나 라벨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으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거나 훼손하여 판매할 수 없다. 또한 (주)에이필드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주)에이필드의 마케팅 플랜이나 판매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전달 할 수 없다.

4. 인터넷 사이트 관련 행위 금지

- ①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의 상호·로고를 회사의 동의없이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회사 쇼핑물을 copy해서는 아니된다.
- ② 미확인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을 과장해서는 아니된다.
- ③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회사 상호 혹은 상표를 이용하여 광고성 전자 메일 등을 발송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 ⑤ 에이필드 상품을 아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제공 및 판매 할 경우 공정한 사업 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즉시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회사 및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에이필드 상품을 오픈 마켓 또는 온라인 쇼핑물에 회원 판매가 미만으로 판매 하였을 시

- 회원이 아닌 제3자(재판매 업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 할 시

- 제3자(재판매 업자)가 회원 판매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것을 인지 하고 있음에도 공급 하거나 판매 할 시

제34조 직급자의 직급남용 및 교육후원의무 태만

회원은 직급을 이용하여 하위 회원에게 부담을 느끼는 요구 또는 하위 회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발언 및 폭언 등을 공공연하게 하거나 하위 회원들에 대한 교육, 성실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업관행을 방관하거나 수당만 수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상위 직급자의 품의유지 및 책임

1. 에이필드의 다이아몬드 이상 상위 직급자는 리더 사업자로서 적절한 후원활동, 센터 교육 및 강의 등을 필요 시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사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 컨벤션, 직급자 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3. 다이아몬드 이상 상위 직급자는 리더사업자로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인 장소(인터넷 포함)에서의 비방하는 행위 또는 사실 확인이 불명확한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되며 진상조사를 통해 회사의 영업손실 또는 이미지와 명성의 훼손이 사실로 판 단 될 시 회사는 정도에 따라 회원관리규정에 의거 회원 자격해지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회사 및 회원에 대한 비방

회원은 회사 및 임직원, 타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SNS 및 메시지 포함)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로 회사의 이미지 실추 및 영업 손실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회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회원 제재의 범위는 활동 정지 및 회원 영구 제명까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7조 회원 권리의 양도·양수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음성적으로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판매조직 및 회원의 권리 및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회원 간 금전거래

1. 회원은 회사의 조직을 이용하여 상품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회원은 판매(계약)이후 상품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전달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품에 관한 설명 등 상품정보(사용방법 등)를 고지(설명)해야 된다.
3. 회원 간 금전거래는 절대 불가 하다.

제39조 회사 또는 회원 간의 물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업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만을 주장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및 교육센터 내에서 소란, 폭력, 폭언 등의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
2. 금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원 상호 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제40조 조직 내 조직형성

판매조직 내에 별도의 목적(별도사업, 친목도모, 기타)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별도의 호칭을 공공연하게 사용하거나 판매의 목적보다는 그룹의 목적을 우선시하는 경우 또는 특정지역, 특정회원들을 규합하여 직급자의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타 회원에 대한 무분별한 모함

회원은 구체적 증거없이 타 회원의 징계를 요구하며 허위로 집단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 또는 민원 제기 이후 오해 갈등의 해소를 이유로 징계 해제를 건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 비윤리적 사업행위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불륜, 가정불화로 인한 가출, 기타 남녀회원 간 비윤리적 행위 (위 사항은 개인적 문제에 해당되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회원 간의 올바른 판매 문화와 질서를 흐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거나 직급자로서 타 회원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해 그 파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 자격해지 및 기타 조치를 할 수 있다.)
2. 회원등록 및 매출과 관련하여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3.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또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코인 업체의 가입 및 활동이 확인되었을 시 에이필드 회원의 피해 예방과 사업자 보호를 위해 회사는 해당 회원에 대해 절차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에이필드 회원의 피해 발생이 확인 될 경우 회사는 해당 불법 업체에 대해 공제조합 및 수사기관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3조 현금유용행위에 대한 조치

타 회원의 현금매출을 본인 및 타인의 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자격을 해지시킬 수 있다.

제6장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및 자격의 정지 등

제44조 윤리자정위원회 운영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타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본 규정에 위반되었을 시 사안이 중대하여 자격정지 1개월 이상의 조치가 예상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종 징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징계 대상자들은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1. 윤리자정위원회는 회사 임직원 및 법률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징계처리과정까지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위반행위 발생 시 자료 첨부하여 접수
 - ② 위반 회원에 답변 및 소명자료 요청
 - ③ 사실 확인 및 실태조사
 - ④ 위반행위를 한 회원에 결정된 제재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통보 한다.
 - ⑤ 회원의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기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검토 기간 동안 자격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징계가 결정되면 회사는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거나 해당 센터에 이를 공고(전자문서 포함)하고 10일이 경과되면 이의신청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지된 내용대로 처리한다.

제45조 제재의 종류

1. 회원 영구제명 : 회원자격 영구적 상실
2. 자격해지 : 회원자격 상실 (6개월 유예기간)
2. 자격정지 : 일정기간 동안 수당 및 직급이 동시에 소멸된다.
3. 수당지급정지 :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해제시 일괄 지급됨)
4. 경고 : 에이필드 회원 금지행위, 윤리규정,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제46조 경고 등

회원이 회원금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회사는 해당 회원을 최대 2차까지 경고할 수 있다. (단, 경고를 통보 및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본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자격해지(제명)할 수 있다.) (경고통보: 경고의 이행은 내용증명,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7장 탈퇴 및 자격해지

제47조 회원의 자격 정지

1. 회원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사, 후원수당 지급기준, 또는 제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 ② 회원 본인이 아닌 차명 등록 및 활동을 할 경우
 - ③ 타사등록(동종업계) 및 활동행위
 - ④ 에이필드 판매원 타사(동종업계) 유인행위
 - 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하여 상품 재판매를 하거나 해당 행위를 방조한 경우
 - ⑥ 회사(직원) 및 회원을 공개 또는 비공개적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비방 및 명예를 훼손 하였을 경우
 - ⑦ 회사에서 제작한 로고 및 온, 오프라인 자료를 승인 없이 무단사용 하였을 경우
 - ⑧ 회사의 기밀 (회원계보도 및 회원 개인정보), 정보 등을 무단으로 타 사업(동종업계) 을 위해 활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⑨ 직급을 가기 위한 고의적 반품 및 반품을 유도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⑩ 비윤리적 사업활동을 하거나 타 회원에게 강요 하였을 경우
 - ⑪ 방문판매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2.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정도가 중대 하거나 위반이 2회를 초과하여 상습적인 경우 경고 절차 없이 바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회사는 자격이 정지됨과 동시에 해당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회원자격 정지 시 본사는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수당 발생을 정지 할 수 있다.
4. 회사는 회원의 규정위반 민원에 대해 접수를 받은 경우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동안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 로그인 을 임시적으로 정지 할 수 있다.
5. 회원 자격정지의 정지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로 한다.
6.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은 정지 기간 동안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받으며, 세부적인 처벌 항목과 처벌 수위는 윤리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 한다.
 - ① 상품구매 및 판매자격 상실
 - ② 신규 회원의 추천 및 후원자격 상실
 - ③ 에이필드 공식 행사 참가 금지
 - ④ 센터출입 금지
 - ⑤ 센터장의 경우 회사공식 행사 좌석 등 공식배제
7. 회사는 회원 자격을 정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후원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 할 수도 있다.

제48조 탈퇴

- 1) 자진탈퇴 :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탈퇴를 한 경우
(탈퇴 후 3개월뒤 재가입 가능)
- 2) 3개월 무실적탈퇴 : 회원 가입 후 3개월간 상품구매가 없을 경우
(회원 본인 요청 시 탈퇴 후 바로 재가입 가능)

- 3) 구매 후 3개월 무실적탈퇴 : 회원가입 후 상품 최종구매일이 3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회원 본인 요청 시 탈퇴 후 바로 재가입 가능)

제49조 자격 해지(제명)

1.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제재 처분을 받은 자
 - ② 자신의 회원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③ 회사에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심각한 영업적 손실”이라 함은 회사 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회사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송 등으로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 ④ 당사의 회원에게 타 다단계 회사 혹은 유사 다단계 회사(다단계와 유사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를 포함함)의 제품 또는 사업을 권유(소개, 등록유도/등록시키는 행위 등) 홍보, 판매한 경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또는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불법 코인 업체의 가입 또는 확인 될 경우
2. 회사는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자격정지 절차 없이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원자격이 해지될 경우 회원은 회사와의 모든 법률적 관계가 종료되며 회원으로서의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3. 회사는 회원의 자격을 해지함에 있어 해당 회원은 물론 상위 회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반 사실의 사전인지 여부, 성실한 교육 후원의 의무, 직급자로서의 관리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회원의 상위 직급 회원(직 상위가 아닌 전 직급 해당)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50조 회원의 재등록

1. 3개월 무실적 탈퇴 후 재등록
회원 가입 후 3개월동안 구매 이력이 없을 경우 탈퇴 후 당일 회원 재가입이 가능하다.
2. 구매 후 3개월 무실적 탈퇴 후 재등록
회원 가입 후 구매 이력이 있는 회원이 최종 구매일 기준, 3개월 동안 무실적일 경우 탈퇴 후 당일 회원 재가입이 가능하다.
3. 자진탈퇴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자진탈퇴를 할 경우 탈퇴일 기준 3개월 후에 재가입이 가능하다.
 - ① 상기 탈퇴를 요청 할 경우 본사로 다단계 판매원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뒷자리 마킹)과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 ② 다단계 판매원 탈퇴 신청서에 무실적 탈퇴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 자진 탈퇴로 진행된다.

제51조 외국인 회원등록

1. 외국인 회원 등록은 체류 코드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가능 자격이 부여되며, 이에 따라 회원가입 서류를 증빙하여야 한다. (첨부서류:회원등록계약서(국내동일), 외국인거소신고증 앞뒷면 사본, 통장사본, 외국인 회원등록 동의서 각 원본 접수)

2. 외국인의 체류 자격별 활동 가능 범위

| 체류자격 | 다단계 판매원 |
|--|---------|
| 방문취업 (H-2) | 불가 |
| 기업투자(D-8) 또는 무역경영(D-9) | 가능 |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가능 |

* 만 19세 미만 외국인 및 외국인 대학생(유학생)과 체류기간 만기 또는 6개월 미만 외국인 및 불법 체류자는 회원등록 가입불가.

제8장 공고 및 규정 외 사항

제52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 외 사항은 관계법령 및 타 회사 등 일반 상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1조 시행 및 적용

본 규정은 회사에서 공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정적용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다.

상품구매 및 주문안내

회원가입안내

에이필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직접 회원가입을 해주십시오. 단, 에이필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에이필드 회원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회원가입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주문안내

에이필드 홈페이지(마이오피스) : www.apyld.com / 모바일 : m.apyld.com

에이필드 쇼핑몰은 회원 전용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회원등록 한 후, 쇼핑몰을 통해 편리하게 제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주문하신 상품의 상세내역은 홈페이지(빠른조회> 주문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안내

1) 배송기간

결제일로부터 2-3일 소요됩니다. 주말/공휴일은 배송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 산간 등 지역에 따라 배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자연재해, 불가항력 (일시 품질, 수취인 불명, 우편번호 오 입력) 등의 사유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송비 (업체배송상품 합산 제외)

- 총결제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배송비 2,500원
- 총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 무료배송
- 업체배송상품인 경우 : 무료배송

결제방법안내

1) 가상계좌

체결된 주문 건 별로 전용계좌번호가 임의로 발급되어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발급된 계좌로 입금시 은행창구, ATM,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모바일 뱅킹 등 모든 방식의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실시간 결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온라인(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상에서 주문과 동시에 결제를 하는 방식 입니다. 본인인증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용 인증 서비스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카드사별 인증방식에 따라 결제합니다.

3) 단말기 결제

본사나 센터에 비치된 카드단말기로 승인 후 자필로 작성한 상품구매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4) 간편결제

web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본인 카드를 등록하여 상품구매 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주문하는 방식 입니다.

에이필드 고객센터

1833-5002(대표번호) / 팩스 0303-3446-5002

상담시간 : 월~금

(오전9시30분~오후6시30분 / 토,일 공휴일 휴무)

APYLD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179
- 전화 : 1833-5002 / 팩스 : 0303-3446-5002
- 2023.11

에이필드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

에이필드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이필드 회원가입과 동시에 놀라운 소비생활과

글로벌 전문유통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든 에이필드 회원은 회원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활동과 후원활동 등의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에이필드 다단계판매원등록증

회원번호:

(등록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록일자:



APYLD

상기인이 (주)에이필드 회원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79 | T 1833-5002 | F 0303-3446-5002

위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절취한 후 작성하고 코팅 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